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5호

건설신기술 지정

‘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2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	법인명(성명)	주식회사 더빔에스아이(안병욱)		
	주 소	우12982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947 B동 1305호		
	전화번호	031-699-0484	팩스번호	031-699-0483
신청인	법인명(성명)	(주)한국종합기술(이상민)		
	주 소	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(금광동)		
	전화번호	02-2049-5286	팩스번호	02-2049-5115
신청인	법인명(성명)	동부엔지니어링(주)(김완석)		
	주 소	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(안양동, 3층)		
	전화번호	02-2122-6795	팩스번호	02-2122-6830

2. 신기술의 개요

○ 지정번호 : 제926호

○ 명 칭 :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

○ 기술분야 : 토목 / 교량 / 교량거더

○ 내용요약

이 신기술은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한 지면제작방식으로, 강재거더와 콘크리트 케이싱을 합성한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I형 강재거더의 하부플랜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용접량 및 강재량을 감소시키고, 지점부 단부저판플레이트로 강재거더의 단순자립이 가능하여 전공정 지상작업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임

○ 신기술의 범위

지면에 단순 자립시킨 T형 강재거더 하부에 콘크리트를 일체화하고 강연선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8년

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
○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
○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
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신기술품셈

- 해당 없음

5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